

부가가치세 환급 안내문

“수원역 아너스빌 플라츠”를 분양 받아 사업상 용도(직접 운영 또는 사업용 임대)로 사용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임대사업자 등록 후 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부담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며, 일정한 절차에 의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※세무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 및 세무사 등 전문상담을 통하여 계약자 본인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

사업자 등록신청	-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(통상 7~10일내)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만 계약금분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 - 신고관서 : 수원세무서 - 주소 :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(매산로3가 28) / 031-250-4200 - 국세청 문의전화 : 국번 없이 126
부가가치세(VAT)환급신고	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하여야 합니다.
사업자 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환급계좌 개설 구비서류	- 사업자 등록 신청용 - 본인 신분증,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, 분양 계약서(사본) 1부 - 환급 계좌 개설용 - 환급계좌개설신고서 1부, 통장사본 1부, 신분증
사업자등록증 제출처	- 발급 된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필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제출하여야 합니다. - 방문 시간 : 10:00 ~ 18:00 (점심시간 12:00 ~ 13:00) - 대표전화 : 031-227-0401
세금계산서 발행	- 계약자가 사업자등록증 당사에 제출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. - 발급시기 : 계약금, 매회 중도금 약정일, 잔금일 대금에 대하여 익월 10일 이내 발급 ※ 건물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, 토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가 발행되며,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가능 ※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미제출 시, 계약서에 기재한 인적사항 (주민등록번호)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.
유의사항	※ 사업자등록증 간이과세 등록 시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 ※ 부가세 환급계좌 등록 통장사본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 목적으로 반드시 계약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. ※ 세금계산서는 분양(공급)계약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송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바랍니다. (별도 통보 할 의무를 지지 않음) ※ 조기 환급신청을 못하신 경우 분기별 신고기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※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발급신청 후 10일 이내까지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직접 제출해 주셔야 하며, 기한 내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(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등)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.

■ 세무서 위치 안내

